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10. 3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0월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10월8일
- 다. 상정일자 : 제99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3. 10.3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박 도식)

가. 제안이유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사업과 관련 대형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등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이 조례의 내용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 주차장의 주차 시설을 변경.보완.설치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24조의2 관련)
- 2)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에 대한 변경.보완 설치 비용을 지원

받은 부설 주차장의 소유자가 마포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함.(안 24조의4 관련)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형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안 제24조의2 제2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시설 개선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의4 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시설비 등을 보조받은 자가 마포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03.6.20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주택가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인근의 상가, 사무실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유도하고 야간개방 참여 주차장의 주차시설 개선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관련부서에서는 운영방법은 물론 야간개방에 따른 불편 해소방안도 철저히 강구하여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박지위 위원) : 이미 오래전부터 기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까지 요금징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는가?

○ 답변요지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 건축물등의 부설주차장 사용은 개인끼리 합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택가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사업과 관련 대형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등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이 조례의 내용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 관련)
- 나.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에 대한 변경·보완·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마포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4 관련)

3. 근거법령

- 가. 주차장법(2003.7.29 법률 제6954호) 제21조의2
- 나. 지방재정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4조
- 다. 지방재정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24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3. 8. 25~9.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보조금 지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 및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을 보조받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마포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반환금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
근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4조의2(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u> <u>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p><u>제24조의2(보조금 지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u> <u>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 및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경우</u>
<p><u>제24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p> <p>1.~2.(생략) (신설)</p>	<p><u>제24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u></p> <p>----- ----- -----</p> <p>1.~2.(현행과 같음) 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을 보조 받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마포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②(생략)</p>